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각각 증원하고, 국제적 심사기준에 맞춘 의약품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7명(연구사 7명), 국제적 심사기준에 맞춘 의료기기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구강위생 확보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생용품의 기준규격·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각각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

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전단 중 “제4조의2제2항제3호”를 “제4조의2제2항제5호”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한시정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

· 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643”을 “645”로 하고, 일반직 계 “642”를 “64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23”을 “62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325”를 “1,335”로 하고, 일반직 계 “1,325”를 “1,33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12”를 “1,322”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7조 관련)

제37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4월 29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②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43</u>	<u>645</u>	+2
·	·	·	
·	·	·	
일반직 계	<u>642</u>	<u>644</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23</u>	<u>625</u>	+2
·	·	·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25</u>	<u>1,335</u>	+10
일반직 계	<u>1,325</u>	<u>1,335</u>	+10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12</u>	<u>1,322</u>	+1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3